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68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 민형배·주철현·소병훈

이개호 • 안도걸 • 김동아

어기구 • 남인순 • 정성호

이훈기 • 윤준병 • 전진숙

이정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 장비 및 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증가 이유로 활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적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1년 공항설계지침에서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나 구조물은 충돌시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이일어나도록 설계(frangible design)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미국연방항공청(FAA)도 항행안전구역 내 접근지시등과 로컬라이저 안테나 설치에 부러지지 않는 탑(tower)을 쌓지 말 것을 명시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공항 장비와 설치물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상시에는 구조적 통합성·견고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

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 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통령령과 부렁,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4조).

법률 제 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설치에 관한"을 "설치는 다음 각 호의"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3. 활주로 안전구역(항공기가 활주로 미착 또는 과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한다) 내 구조물의 강도는 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공기의 감속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
- 4.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착륙대・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지시설 등이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의 설치기준 등) 제6조제1항	의 설치기준 등)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	
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u>설치</u>	<u>설치는</u>
<u>에 관한</u> 기준(이하 "시설설치	다음 각 호의
기준"이라 한다) <u>은 대통령령으</u>	<u>에 따른</u>
<u>로 정한다</u> .	<u>다</u> .
<u><신 설></u>	1.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
	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
	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
	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
	<u>다.</u>
<u><신 설></u>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
	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
	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이 인
	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

	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u> </u>
<u> <신 설></u>	3. 활주로 안전구역(항공기가
	활주로 미착 또는 과주, 이탈
	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
	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
	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
	대를 말한다) 내 구조물의 강
	도는 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공기의 감속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
<u><신 설></u>	4.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착륙대·유도로의 길
	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지
	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